

의안번호	2212012
의 퇴 인	조은희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6.
추 계 번호	25C4255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4 (공공버팀목약국의 지정 및 지원)	• 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음 • (제4항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버팀목약국의 개설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의4 (공공버팀목약국의 지정 및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공버팀목약국의 지정 및 지원(안 제21조의4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약국의 개설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2025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「공공야간·심야약국 운영 지원」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에 220개(인구감소지역은 18개) 약국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, 해당 사업은 야간·심야시간대에 한정

- 전국에 약국 220개소를 지정하여 야간·심야시간 대 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시간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, 2025년 예산으로 50억 1,600만원이 편성되었음

[표 1] 공공야간·심야약국 지정 현황(2025년 8월 기준)

(단위: 명)

지역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강원	
지정 개소 수 (인구감소지역)	33	15 (4)	10 (2)	20	6	4	4	4	
지역	경기	충북	충남	경북	경남	전북	전남	제주	세종
지정 개소 수 (인구감소지역)	59	6	9 (2)	9 (1)	10	12 (5)	11 (4)	6	2

자료: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정개소, 지정기준, 지원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파악이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nabo.go.kr